

국무총리행정조정실



국무총리 지시 제29호

(720-2015, 6)

1982. 11. 15.

수신 :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, 서울특별시장

제목 : 공무국외여행 통제에 관한 재강조 지시

공직자의 효율적인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그간 누차에 걸쳐
지시한 바 있어 그 시행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, 아직도 여행복족,
인원·기간·방문국등의 적절치 못하여 예산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, 재외
공관과 외국 기관에 누를 끼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이에 대한 엄격한 사전
조정·통제가 요망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,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의
국외출장 결정시에는 재외공관원 및 주재관을 최대한 활용, 최소한의
인원만을 출장하고 출장자 개인에게는 명확한 임무와 활동 목표를
부여하는 등 경제성있고 조직적인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기시다한
국무총리 지시 제 22호 및 별첨 공무원 국외여행 업무 세부 지침의 이행에
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별첨 : 공무국외여행 업무 세부 지침. 끝.

국

무

총

리

129

공무국외여행업무세부지침

=====

공무국외여행 심사업무를 관리하는 외무부 및 총무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심사 요청 부처도 자체심사를 철저히 한 후 요청도록 할 것.

1.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격성

- 무계획적, 불요불급한 여행 억제
- 외무부, 해당공관 혹은 각부처 해외주재관을 통하여 처리 가능한 업무를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.
- 여행목적 및 예상되는 성과에 부적격한 자의 해외여행 금지
- 동일 목적의 연례적, 중복적 여행억제(연차회의 참석등은 예외)
- 동일인의 빈번한 해외여행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억제
-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경우지 여행 억제

2.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

- 여행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별도의 사유를 명시.
-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여행시기의 적합성에 특히 유념.

3. 파견인원

- 동일 목적에 대한 부처단위의 산발적·개별적 여행을 지양하고
합동 파견단을 구성하는 등 외교화적인 방안 강구.
- 여행자 별 임무 및 활동 목표의 명확한 부여
- 수행원 대동의 원칙적 지양.

4.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부처간 사전협의 강화

- 국외여행의 목적과 일정등에 관하여 관련부처, 재외공관 및
관련 외국 기관과의 협조를 최대한 강화할 것.
- 국외여행을 요청할 때에는 허가(식사·결제등)에 소요되는
기간과 외무부, 재외공관 및 관련 외국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
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요청할 것.

5. 여행자 준수사항

- 여행자는 부여받은 활동 목표와 임무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
자료 조사 및 연구등을 통하여 국외여행을 위한 사전준비에
만전을 기할 것.
- 여행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무부 및 재외공관이 외국
당국과의 협의차에 확정, 주선한 일정등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
없도록 할 것. 끝.